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64

발의연월일: 2021. 5. 31.

발 의 자 : 서영교·김민철·김영배

박상혁 • 박완주 • 박재호

백혜련 • 양기대 • 양정숙

오영환 · 이용우 · 이해식

이형석 · 임호선 · 정정순

한정애 의워(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는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음.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	주택 세율 특례) ①
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이 <u>6억원</u> 이하인 주택에	9억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